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30.(목) 11:00 < 5. 31.(금) 조간 > 배포 2024. 5. 30.(목)

청주 대형마트 평일휴무 1년, 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 청주 대형마트 평일전환 1주년 계기「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1주년을 맞이하여 5월 30일(목)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 중소상인, 지자체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민생토론회(1.22)에서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가 평일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전시, 동대문구, 청주시 등에서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언제든지 가족들과 쇼핑할 수 있게 되어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휴무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었다는 분석결과를 언급하며, 평일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같다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평일휴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대형마트 평일휴무에 대해 청주시 이용자의 78.1% 만족('24.5, 대한상의 설문조사)

한편, 산업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날 오 실장도 여름철 먹거리, 주요 생필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이수연 (044-203-43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민생문답 자료**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필요성은?

○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으로 귀결

○ 최근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증가로 휴일 장보기,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 증가 → 의무휴업 평일전환, 새벽배송 허용으로 국민 불편 해소 필요

2.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발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리해지고,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도 활성화됨

* (대구시) 소매업 매출액 증가율 19.8%(인근 지역 대비 높은 수준), 소비자 만족도 87.5% (서초구, 소상공인 설문) 매출 증가 30%(감소 10.0%), 유동인구 증가 38.6%(감소 8.6%) 응답 (평일전환 지역 소비자 설문) 이용자 만족도 청주시 78.1%, 서초구 87.2%, 동대문구 81.4%

○ 이에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의무휴업 평일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부산 16개 구군, 의정부시 등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전통시장, 마트 근로자 등 우려가 있는데, 방안은?

○ 대구시, 서초구 평일전환이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 동대문구 경동시장 상인도 평일 휴무 이후 주말에 손님이 늘었다며 그간의 고민이 기우였다고 평가

○ 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업계와 함께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4.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불가능한건 아닌지?

○ 유통법상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의 시행여부 등은 기초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며, 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의 영업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다만, 유통법에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의무휴업 공휴일 원칙, 영업제한 시간(새벽)에 배송 불가 등)은 22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